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26 - 22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,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: 2026－98호(2026. 11. 04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
3. 점용·사용의 장소
 ○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684m^2(2026. 11. 04. ~ 2031. 11. 03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　명 : 창원시장
 - 주　소 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

2026. 11. 4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